

의안번호	2200205
의 퇴 인	임이자 의원
회 답 일	2024.7.19.
추 계 번호	24B04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1,000만원~3억 7,100만원, 2029년 3억 2,100만원~3억 8,300만원 등 장래에 발생할 명단공개·신용제재 건수에 대한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5억 3,500만원~18억 3,300만원(연평균 3억 700만원~3억 6,7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1 (20~30% 증가)	310	292	301	311	321	1,535	307
	시나리오2 (50% 증가)	371	348	359	371	383	1,833	3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제1항)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43조의2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를 됨.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제4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3	안 제43조의3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채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채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채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43조의4 (상습채불사업 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상습채불사업주”라 한다)의 임금등 채불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재량규정
		상습채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함(제2항) 1.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채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채불하고,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의무규정
5	안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43조의6 (채불사업주 명 단공개 등을 위 한 자료제공 등 의 요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국가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호의2.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3.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 미대상 -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3	안 제43조의3(임금등 채불자료의 제공)	—	• 미대상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채불하는 사업주의 임금등 채불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4	안 제43조의4(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신설	—	• 미대상 -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등 채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하는 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5	안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	—
6	안 제43조의6(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신설	—	• 미대상 -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지출이 변화할 수 있으나, 재정지출의 감소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¹⁾ 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7	안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 미대상 -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계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안 제43조의3)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규정(안 제43조의4)을 신설하고 있음
 - － 개정안은 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현시점에서 구체적 위탁기관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정함
 - 업무 위탁 기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안 제43조의2)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안 제43조의3)하며, 이밖에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안 제43조의4) 등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함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소비자물가상승률 요율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명목임금상승률	2.9	3.4	3.2	3.2	3.2	3.2
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요율	11.124	11.234	11.330	11.425	11.519	11.614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 현재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제43조의2) 및 체불자료 제공(제43조의3) 업무를 자체 행정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5급 1인과 7급 1인이 담당하고 있음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에 대해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공개

※ (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10년(2014~2023년)간 명단공개·신용제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최근 10년간 명단공개·신용제재 현황: 2014~2023년

(단위: 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명단공개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신용제재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합계	795	473	902	307	1,078	972	1,058	1,009	442	703

주: 연도별 실시인원

자료 : 고용노동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위탁기관은 기존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이던 업무와 더불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안 43조의4 신설)과 이와 관련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안 제43조의3) 등을 시행하여야 함
 - 또한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 요건 및 기존 신용제재 요건 확대 및 현행법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안 제43조의2) 대상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심의 및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됨
 - 개정안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란, 현행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³⁾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안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함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

3)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 사업주가 매년 8,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⁴⁾하고 있어 본 추계서는 이를 토대로 추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습체불 사업주 요건 및 기존 신용제제 요건이 확대되는 등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등이 확대되므로, 장래에 발생할 확대 예상건수는 20%, 30%, 50% 증가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

□ 본 추계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에 대해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이때, 근로복지공단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가.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필요인원)** 필요인원은 1인당 처리건수와 예상건수를 토대로 산출
 - (1인당 처리건수) 최근 10년 평균 명단공개 및 신용제제 건수(774건)를 행정인력 2인이 처리한 것을 참고하여 1인당 처리건수를 387건으로 산출
 - (예상건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최근 10년간 최대값(1,078건)을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예상건수를 현행 대비 20%, 30%,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누어 산출
 - 산출 결과 20% 증가하는 경우와 30% 증가하는 경우 필요인원이 동일하므로, 시나리오는 20%(30%) 확대되는 시나리오1과 50% 확대되는 시나리오2로 구성

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표 3] 필요인원 산출: 2025~2029년

(단위: 건)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처리건수(A)	387	387	387	387	387
예상 건수(B)					
- 20% 확대	1,294	1,294	1,294	1,294	1,294
- 30% 확대	1,401	1,401	1,401	1,401	1,401
- 50% 확대	1,617	1,617	1,617	1,617	1,617
필요인원(C=B/A, 명) ²⁾					
- 20% 확대	4	4	4	4	4
- 30% 확대	4	4	4	4	4
- 50% 확대	5	5	5	5	5

주: 필요인원은 올림으로 산출

- (인건비)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조사관 수에 각 직급별 단가를 적용하며, 인건비 단가는 2023년 근로복지공단 직급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산출
 - 3급 78,228천원, 4급 63,165천원, 5급 44,583천원⁵⁾
 -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표 4] 인건비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필요인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나리오1						
인 건 비	3급(A1)	1명	83	86	89	92
	4급(B1)	1명	67	69	72	74
	5급(C1)	2명	95	98	101	104
	소계(D1=A1+B1+C1)	4명	245	253	261	270
시나리오2						
인 건 비	3급(A2)	1명	83	86	89	92
	4급(B2)	1명	67	69	72	74
	5급(C2)	3명	142	147	152	157
	소계(D2=A2+B2+C2)	5명	293	302	312	322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 채용 기관부담금 요율(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표 5]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시나리오2(A1)	245	253	261	270	278	1,308	262
시나리오1(A2)	293	302	312	322	332	1,561	312
기관부담금							
시나리오(B1)	28	29	30	31	32	150	30
시나리오(B2)	33	34	36	37	39	178	36
소계(C=A1+B1)	273	282	291	301	311	1,458	292
소계(C=A2+B2)	326	336	348	359	371	1,740	34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는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589.2만원⁶⁾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PC·사무집기 등 구입비는 2025년 첫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인건비 총액에 3.78%를 적용하여 산출

6)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20. 6.

[표 6]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자산취득비					
시나리오1(A1)	34	—	—	—	—
시나리오2(A2)	38	—	—	—	—
기본경비					
시나리오(B1)	9	10	10	10	11
시나리오(B2)	11	11	12	12	1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명단공개·신용제재 건수에 대한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5억 3,500만원~18억 3,300만원 (연평균 3억 700만원~3억 6,700만원)으로 추계

[표 7] 업무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인건비(A1)	245	253	261	270	278	1,308	262
기관부담금(B1)	28	29	30	31	32	150	30
자산취득비(C1)	28	—	—	—	—	28	6
기본경비(D1)	9	10	10	10	11	49	10
소계(E1=A1+B1+C1+D1)	310	292	301	311	321	1,535	307
시나리오2							
인건비(A2)	293	302	312	322	332	1,561	312
기관부담금(B2)	33	34	36	37	39	178	36
자산취득비(C2)	34	—	—	—	—	34	7
기본경비(D2)	11	11	12	12	13	59	12
소계(E2=A2+B2+C2+D2)	371	348	359	371	383	1,833	367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관련 예산 및 채용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